

부천시도시관리계획(철도:도시철도)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7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5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8년 7월 15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이귀웅)

□ 제안이유

-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의 환승체계 구축, 경인선의 혼잡완화, 지하철 이용 효율 증대 등을 위하여 경기도 고시 제2005-264(2005. 08. 16)호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 결정 (부천시 구간 : 본선 7,390m, 6개 정거장)한 바 있으나,
- 여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에 맞추어 서울지하철 7호선 본선 일부구간과 751정거장, 754정거장 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여월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계남큰길이 25m에서 40m로 확장됨에 따라 서울지하철 7호선 본선 일부구간과 751정거장의 외부 출입구 및 환기구시설 위치를 변경하고,
- 754정거장의 출입구를 인접한 GS백화점과 연결하여 보다 효율

적인 보행동선 유지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변경결정(일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) 하고자 함.

□ 근거법령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나목』

□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

-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 결정(변경) 조서

- 본 선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		규 모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점	종점	주요경과지	연장(m)	면적(m ²)		
변경		철도	도시철도 (본선)	원미구 춘의동 산110	원미구 상동623	종합운동장 부천시청 상동지구	7,390 (폭7.2~13.6)	108,056 (중)118	2005.8.16 (경고264호)	평균해수 면기준 -193~21m

※ 연장 변경 없음, 출입구 및 환기구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.

- 정거장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규 모(m ²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철도	751정거장	원미구 춘의동 3-1일대	6,176	증) 336	6,512	평균해수면기준 4.6~24.1m
변경	철도	754정거장	원미구 중동 1242일대	8,078	증) 290	8,368	평균해수면기준 -13.9~10.8m 일부 입체적 도시계획결정

※ 754정거장의 경우 지하철정거장 대합실간 연결통로 설치를 위해 GS백화점 부지의 지하1층 300.06㎡, 지상1층 37.14㎡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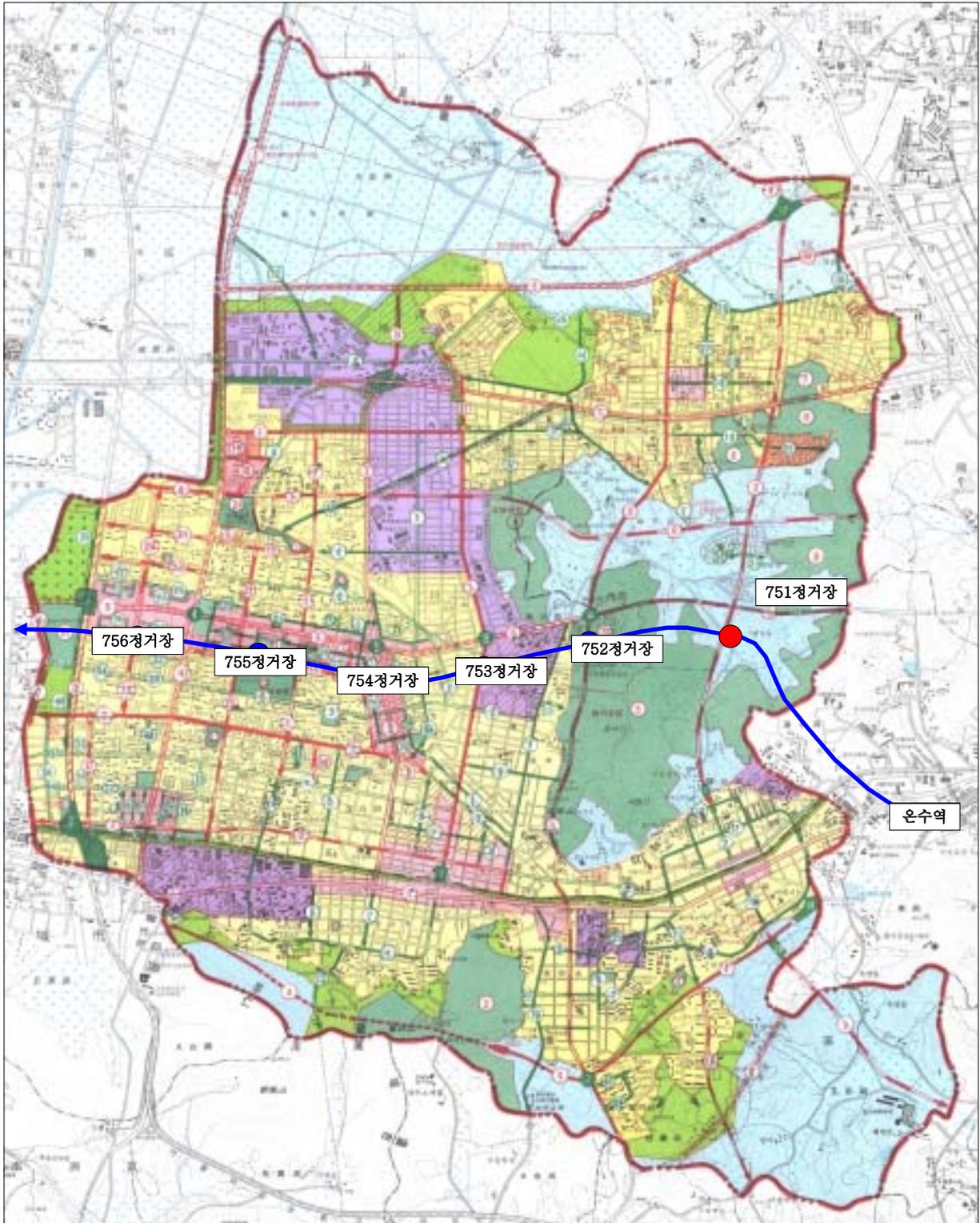
-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구분	규모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	도시철도 (754정거장 #3, #4 출입구)	원미구 중동 1140외 1필지	지하1층 지상1층		증) 300.06 증) 37.14	300.06 37.14	2005.8.16 (경고264호)	도면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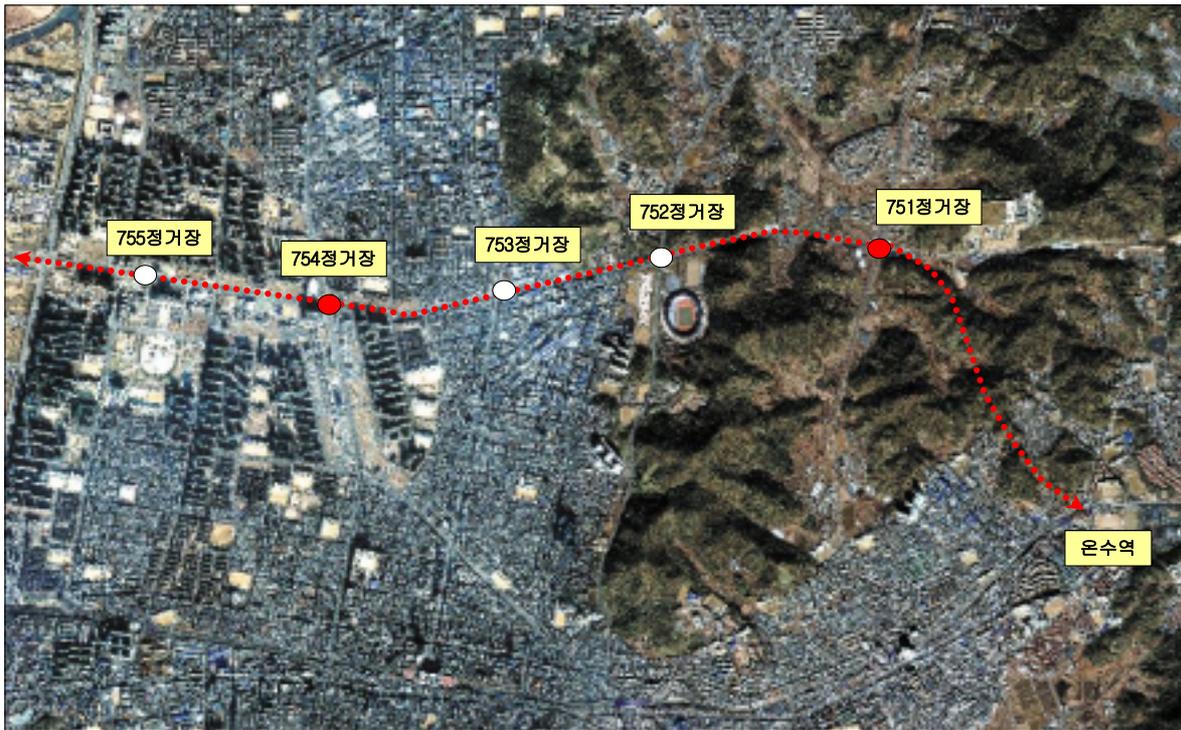
○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	도시철도 (본선)	○ 면적 변경 - 기정 : 107,938m ² - 변경 : 증) 118m ² - 변경후 : 108,056m ²	○ 여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(25m→40m)에 따라 751정거장 주변 본선구간 일부 변경
	도시철도 (751정거장)	○ 면적 변경 - 기정 : 6,176m ² - 변경 : 증) 336m ² - 변경후 : 6,512m ²	○ 여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(25m→40m)에 맞추어 751정거장 외부 출입구 및 환기구시설 위치변경
	도시철도 (754정거장)	○ 면적 변경 - 기정 : 8,078m ² - 변경 : 증) 290m ² - 변경후 : 8,368m ² ○ 입체적 도시계획결정 - 지하1층 : 330.06m ² - 지상1층 : 37.14m ²	○ 기존 GS백화점 방향 외부출입구 2개소를 삭제하고, GS백화점과 지하철정거장 대합실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보행동선 유지 및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며, ○ 이를 위해 GS백화점 지하1층 및 지상1층 일부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.

□ 위치도



□ 위성영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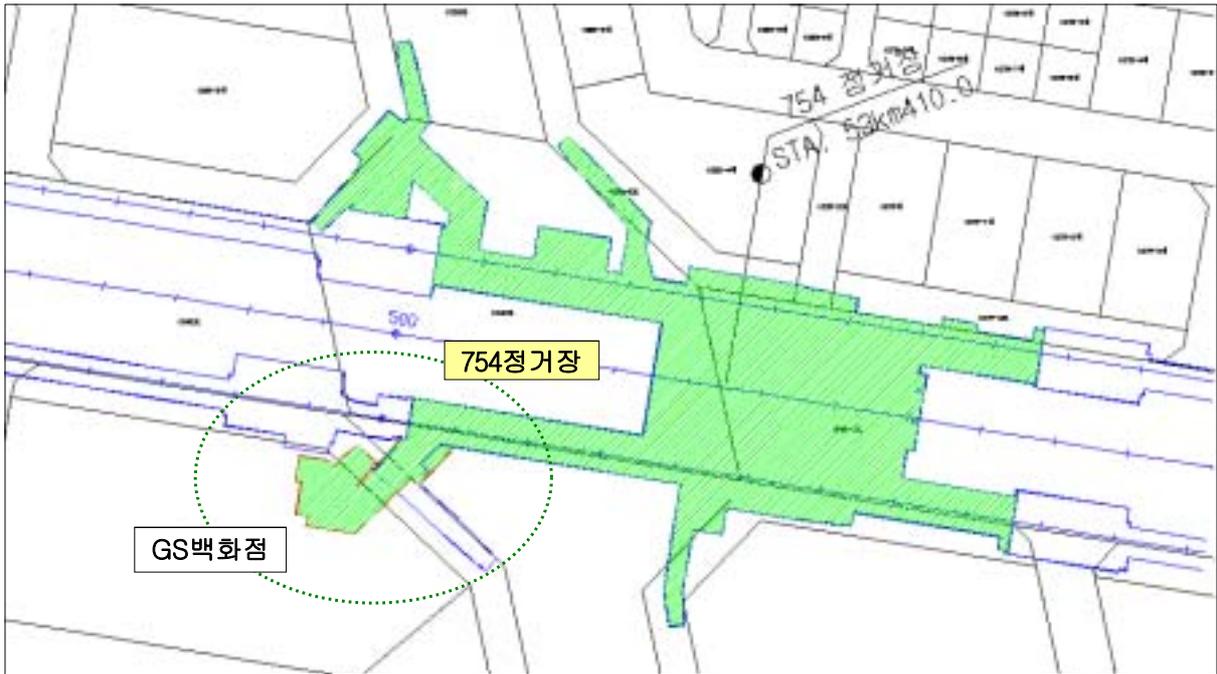
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○ 본선 및 751정거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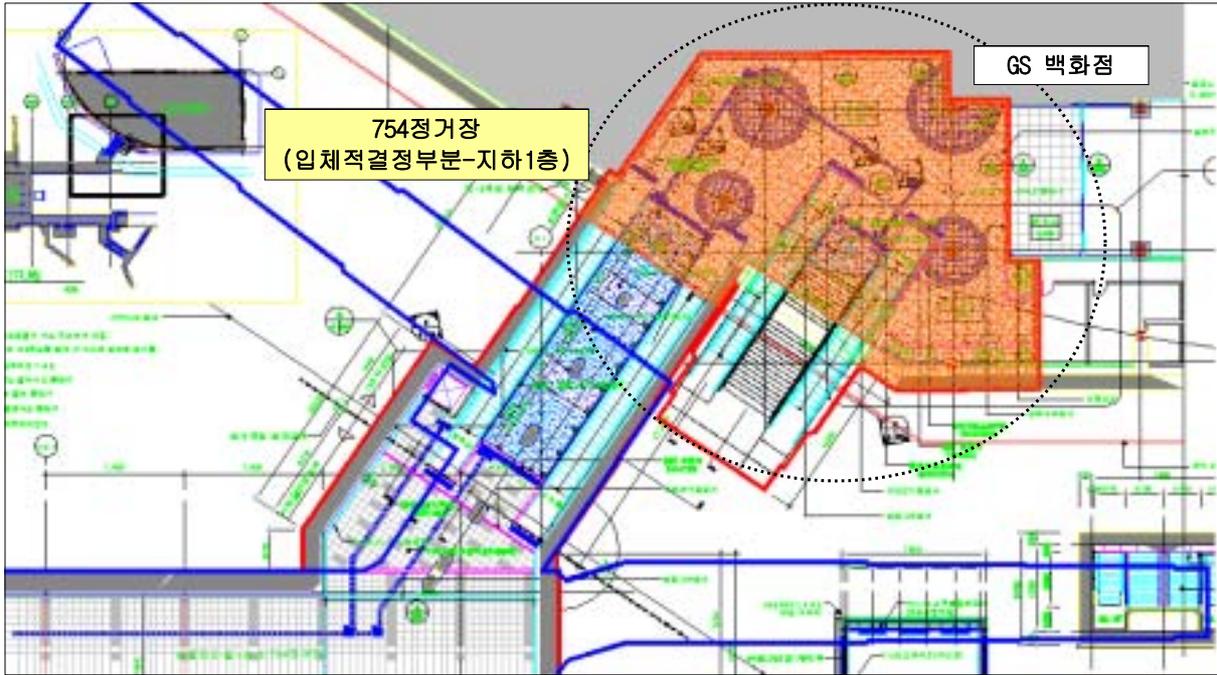
○ 754정거장(입체적 결정부분 포함)



○ 754정거장 입체적 결정도(지상1층)



○ 754정거장 입체적 결정도(지하1층)

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754정거장이 GS백화점을 통과하는데 출입구 건설에 따른 비용은 얼마이며 부담은 누가하나?	○출입구 공사비용 및 에스컬레이트비용은 약 40억원이 소요되며 GS백화점에서 모두 부담함.
○출입구에 대한 전기료 등 각종 유지관리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나요?	○모든 관리비용은 GS백화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음.
○출입구를 GS백화점에 설치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	○출입구를 GS백화점에 설치하므로 인도를 확보하여 시민의 통행에 편리하고 지하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.

부천도시관리계획(철도:도시철도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

의안번호	269	안전명	부천도시관리계획(철도:도시철도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(안)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	제145회 부천시의회 (제1차 정례회)
		연월일	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(2008. 7. 15)

부천도시관리계획(철도:도시철도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

-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에 위치한 여월택지개발지구내 계남큰길이 확장(25m⇒40m)됨에 따라 본선 일부구간을 확장하고 751정거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며,
- 754정거장의 출입구를 인접한 GS백화점과 연결하여 시민통행에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및 정거장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것으로
- GS백화점과 754정거장간 사유지내 새로이 시설되는 보행통로 및 출입구 시설은 추후 시설물 소유자 변동등으로 인한 관리상 문제점 발생 및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GS백화점이 비용 부담과 시설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협약체결을 이행하는 의견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함.』

2008. 7. 15.

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부천시도시관리계획(철도:도시철도)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

의안 번호	제269호
의결 년월일	2008. 7. 18 (제145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6. 3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의 환승체계 구축, 경인선의 혼잡완화, 지하철 이용 효율 증대 등을 위하여 경기도 고시 제2005-264(2005. 08. 16)호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 결정(부천시 구간 : 본선 7,390m, 6개 정거장)한 바 있으나,
- 여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에 맞추어 서울지하철 7호선 본선 일부구간과 751정거장, 754정거장 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여월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계남큰길이 25m에서 40m로 확장됨에 따라 서울지하철 7호선 본선 일부구간과 751정거장의 외부 출입구 및 환기구시설 위치를 변경하고,
- 754정거장의 출입구를 인접한 GS백화점과 연결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행동선 유지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변경결정(일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) 하고자 함.

□ 근거법령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나목』

□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

-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 결정(변경) 조서

- 본 선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		규 모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점	종점	주요경과지	연장(m)	면적(m ²)		
변경		철도	도시철도 (본선)	원미구 춘의동 산110	원미구 상동623	종합운동장 부천시청 상동지구	7,390 (폭7.2~13.6)	108,056 (증)118	2005.8.16 (경고264호)	평균해수 면기준 -19.3~21m

※ 연장 변경 없음, 출입구 및 환기구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.

- 정거장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규 모(m ²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철도	751정거장	원미구 춘의동 3-1일대	6,176	증) 336	6,512	평균해수면기준 4.6~24.1m
변경	철도	754정거장	원미구 중동 1242일대	8,078	증) 290	8,368	평균해수면기준 -13.9~10.8m 일부 입체적 도시계획결정

※ 754정거장의 경우 지하철정거장 대합실간 연결통로 설치를 위해 GS백화점 부지의 지하1층 300.06m², 지상1층 37.14m²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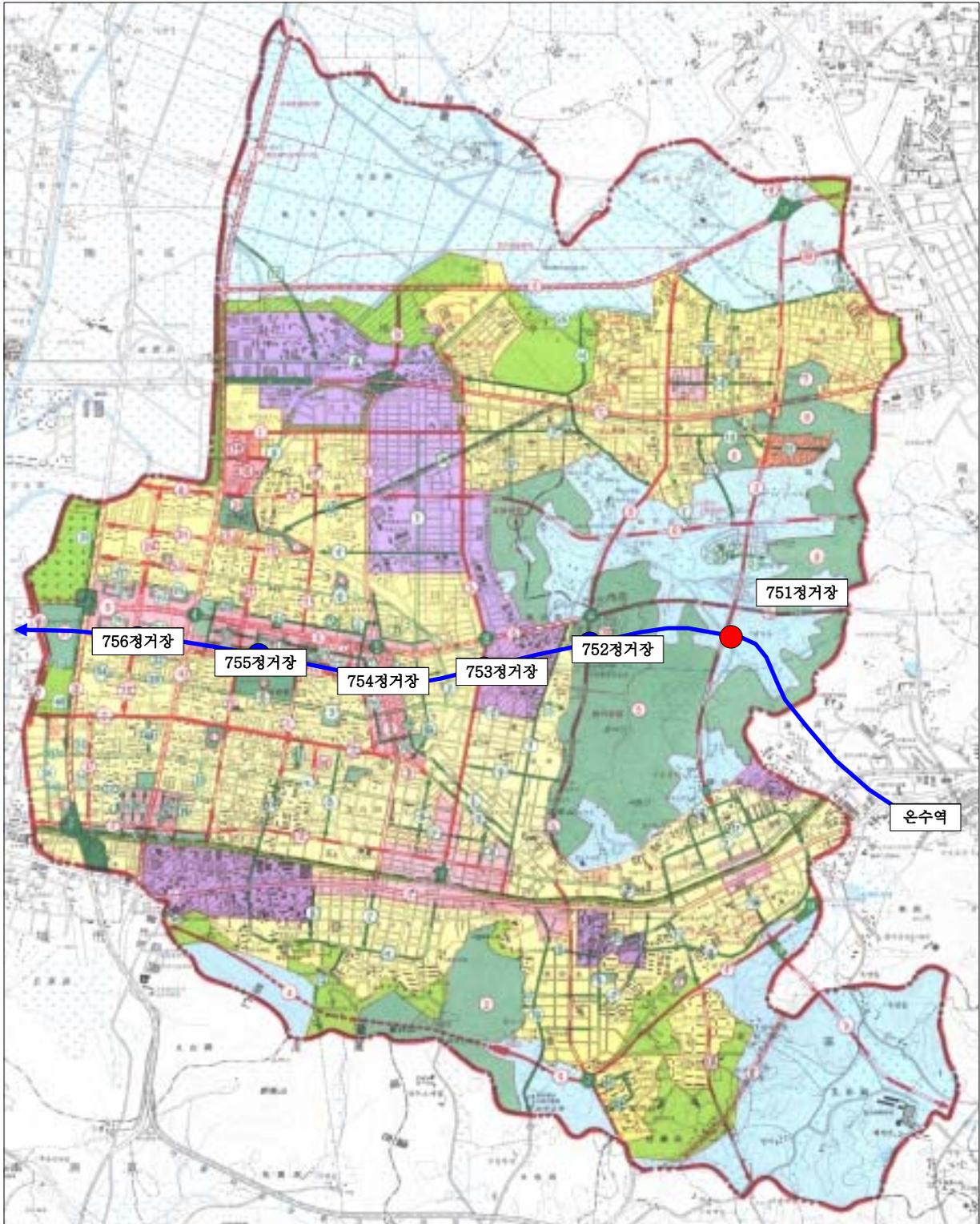
-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구분	규모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	도시철도 (754정거장 #3, #4 출입구)	원미구 중동 1140외 1필지	지하1층 지상1층		증) 300.06 증) 37.14	300.06 37.14	2005.8.16 (경고264호)	도면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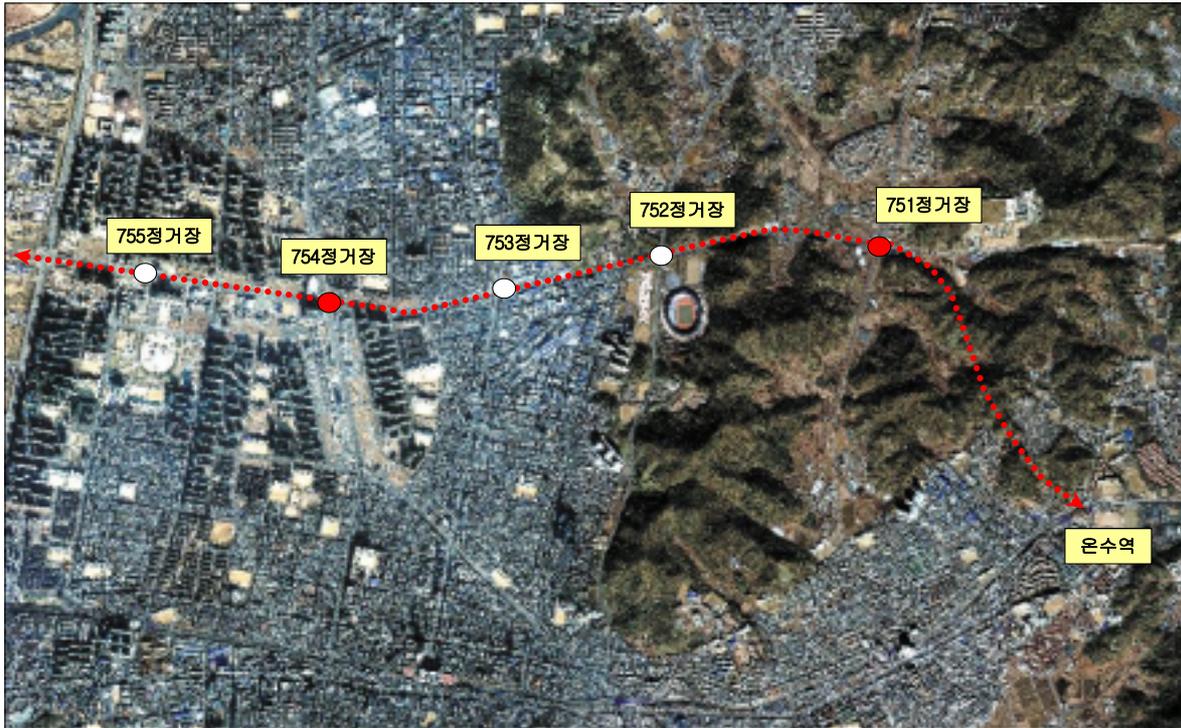
○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	도시철도 (본선)	○ 면적 변경 - 기정 : 107,938m ² - 변경 : 증) 118m ² - 변경후 : 108,056m ²	○ 여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(25m→40m)에 따라 751정거장 주변 본선구간 일부 변경
	도시철도 (751정거장)	○ 면적 변경 - 기정 : 6,176m ² - 변경 : 증) 336m ² - 변경후 : 6,512m ²	○ 여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(25m→40m)에 맞추어 751정거장 외부 출입구 및 환기구시설 위치변경
	도시철도 (754정거장)	○ 면적 변경 - 기정 : 8,078m ² - 변경 : 증) 290m ² - 변경후 : 8,368m ² ○ 입체적 도시계획결정 - 지하1층 : 330.06m ² - 지상1층 : 37.14m ²	○ 기존 GS백화점 방향 외부출입구 2개소를 삭제하고, GS백화점과 지하철정거장 대합실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보행동선 유지 및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며, ○ 이를 위해 GS백화점 지하1층 및 지상1층 일부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.

□ 위치도



□ 위성영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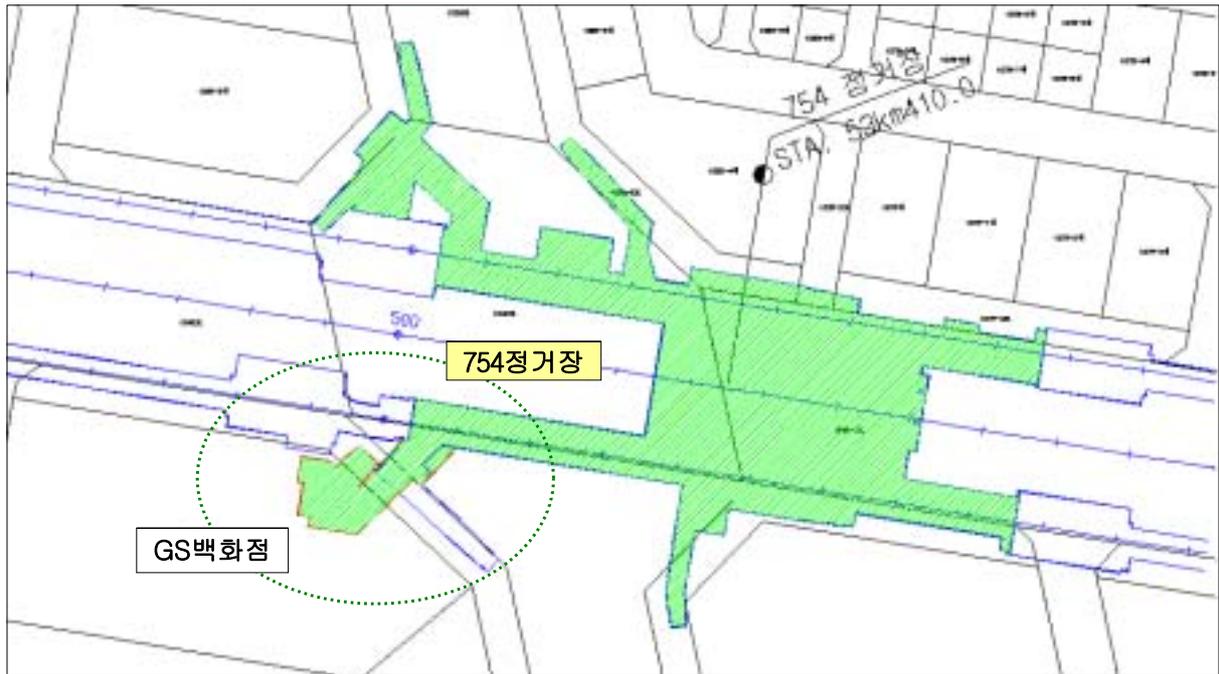
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○ 본선 및 751정거장



○ 754정거장(입체적 결정부분 포함)



○ 754정거장 입체적 결정도(지상1층)



○ 754정거장 입체적 결정도(지하1층)

